지침서식 제1-2호〉

거래외국환은행 지정(변경) 신청서

지정인 성명(상호) : (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주 소 : 전화번호 :
대리인 성명 : (인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주 소 : 전화번호 :
(해외교포여신취급국외금융기관명 :)
아래 항목에 대하여 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(변경)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거 래 항 목	거 래 항 목
( ) 1.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(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) (제4-3조제1항제1호, 제7-2조제8호) - 금년중 송금누계액(변경전 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):U$ ( ) 2. 해외체재비(제4-5조 제2항) ( ) 8.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,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5만불 이하의 지급 (제4-4조 제1항 제3호, 제2항) ( ) 9.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(재경원고시 1995-23. 95.6.28) ( ) 13.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(제8-2조) ( ) 14. 해외지사설치, 영업기금, 설치비,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(제9장 제2절) ( ) 16. 환전영업자(제3-2조 제4항) ( ) 32.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(제9장 제3절) ( ) 33. 상호계산 실시업체(제5-5조) ( ) 53.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(제7-22조 제2항)	( ) 57.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, 담보제공 등(제7-18조 제3항) ( ) 59.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(제9-5조) ( ) 61. 거주자의 해외예금(제7-11조 제2항) ( ) 62.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(제7장 제5절 제2관) ( ) 63.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(제4-7조) ( ) 71. 거주자의 외화자금(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포함) 차입 및 처분(제7-14조) ( ) 72.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(재경부 고시 외관 41271-270.98.11.12) ( ) 74. 단체해외여행(연수)경비 등(제4-5조 제3항) ( ) 75. 해외이주비(제4-6조) ( ) 76.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(제7-2조) ( ) 77.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(제7-15조) ( ) 78.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(제9-39조 제2항) ( ) 79. 거주자의 연간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(제7-2조 제9호)

변경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경유확인: 은행 장(인)

위 신청을 지정(변경지정) 확인함
은행부(점)장(인)

지정확인번호	
지 정 일 자	20 .